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 김영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768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안 제90조제2항)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영환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0. 28.

다. 회 부 일 : 2025. 10.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분까지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교부세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제5조제3항으로 이동되었음에도 해당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인용조항을 「지방교부세법」에 맞춰 수정하고자 함 (안 제90조제2항).

II. 검토의견

1.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안 제90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음	○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음

현행법은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2014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동법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던 교부세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제5조제3항으로 이동되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 조문을 「지방교부세법」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임.

이는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이에 맞추어 현행법이 정비되지 못하여 발생한 입법 오류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법률 적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생략)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② ----- ----- ----- -----제5조제3항 ----- ----- ----- -----.
③ ~ ⑨ (생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51